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-1635호

-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-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신청 관련 주민공람 공고

우리구 고척동 모아타운 내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09월 12일

구로구청장

☐ 공람기간 : 2024.09.12.(목) ~ 2024.09.26.(목)

☐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(☎02-860-2962)

☐ 공람내용

○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명 칭: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
○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명 칭: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37번지 알대 한일유안아파트 상가동 201호

○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건축계획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1-2번지 알대 (대지면적 10,245.00㎡)
- 건축계획 : 5개동/지하2층/지상15층, 용적률 249.87%, 298세대(임대76세대 포함)

○ 변경내용

- 조합임원의 변경

연번	직책	변경 전	변경 후	비고 (변경 사유)
1	감사	최0규	최0규	
2	감사	-	이0자	신규선임

- 정관의 변경

변경 전 정관	변경 후 정관(안)	비고
제15조(임원)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득표순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.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	제15조(임원)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<u>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다득표순</u>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.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<u>2년</u>까지로 하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	
제18조(임원의 해임 등)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.	제18조(임원의 해임 등)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, <u>3회이상 이사회 불참 시</u>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.	
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 ②대의원의 수는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.	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 ②대의원의 수는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<u>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</u>	
제31조(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) 1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	제31조(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) 1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, <u>대의원</u>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	

의견서

사업명

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
의견제출자

성명

연락처

현주소

물건지주소

의견내용

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 제23조제9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의견제출자 :

[서명 또는 (직인)날인]

구로구청장 귀하

비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